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8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 박찬대·장철민·홍성국

김진표 • 맹성규 • 정일영

신동근 · 송영길 · 허종식

문정복 · 홍영표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,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, 동시에 학령인구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, 대학에 대한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지기위해서는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.

특히,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 · 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, 코로나 19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과 중장기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워,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부 투자의효율성 및 고등교육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,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를 모멘텀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 · 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,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,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러한 협의 ·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고등교육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,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(안제7조의2제1항·제2항).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· 변경하려는 경우,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, 고등교육 정책 방향,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(안제7조의2제3항).
- 다.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 · 분석하고,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제4항).

라.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, 신설 · 변경 재정지원 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함(안 제7조의2제5항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·조정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
 - 2.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
 - 3. 대학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
 - 4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
 - 5.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
 - 6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 기관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·변경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

과의 부합 여부,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기관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·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·조정,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·분석,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교육재정) ①・② (생 략)	제7조(교육재정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	<u><삭 제></u>
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	
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	
고,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	
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	
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	
<u> 여야 한다.</u>	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	<u><</u> 삭 제>
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	
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	
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	
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
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	<u><삭 제></u>
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	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	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	
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	
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	
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	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	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	

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
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
수 있으며, 실태조사의 방법과
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신 설>

제7조의2(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
·조정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
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
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
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
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
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
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
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
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
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
야 한다.

-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
- 1.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

- 2.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
- 3. 대학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
- 4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
- 5.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
- 6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 기관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·변경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,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기관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·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

할 수 있다.

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·조정,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·분석,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